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권유제도 개선

-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일부 투자권유제도가 형식에 치우치고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위원회(TF)의 논의를 거쳐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.
 - 복잡한 판매절차로 인한 과도한 시간 소요, 금융투자상품 설명의 확실성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투자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.
- 투자자 위험성향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을 개선하고 투자자에 적합한 상품 선별 방식도 선진화하여 제도시행 경험을 반영한 투자자 적합성 원칙을 구현함.
 - 투자자 위험성향 분류를 위한 일률적 배점기준을 폐지하고 다양한 분류방식과 질문항목 제시를 통해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분류함.
 -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단계 상품위험도 분류기준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회사 및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 및 분류하도록 함.
 - 회사가 투자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현행 점수화 방식 외에 다양한 적합성 판단방식을 제시함.
- 투자자 이해도 중심의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 확실적으로 이루어진 설명 관행을 개선하고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로 함.
 -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는 반면, 투자경험 및 지식이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.
 - 충분한 설명 후에도 투자자가 상품의 손실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중지하도록 하여 취약투자자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함.
- 투자권유 및 판매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자정보의 확인 및 관리절차를 합리화하고 교부서류의 양식 및 내용 등의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함.
 - 필요한 경우 투자자정보 파악절차 생략 및 대리인의 투자자 정보 파악을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자 동의하에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편을 해소함.
 - 일정한 범위내에서 교부서류의 양식 및 내용을 간소화하고 CMA, MMF 등 저위험 상품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단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사용을 가능하게 함.
(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투자권유제도 개선,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등, 7/16)